

의 안 번 호	제948호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48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김종필, 이상식, 김현문,
박지현, 이동우, 이상정,
안지윤 의원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안 제5조)
-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운영 (안 제7조)

3. 조례안 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 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 수립·시행 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제도의 개선 및 기반 조성
4. 자원 조달 및 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놀이 권리 증진 자문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충청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

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및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등에 아동의 건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 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

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연령에 적합한 놀이환경 기반 조성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

2. 비용 발생 요인

-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3. 관련 조문

- 조례안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조례안 제8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어린이 날 행사 : 75,000천원('25~'29년)
-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 85,000천원('25~'29년)
-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180,000천원('25~'29년)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465,611천원('25~'29년)
-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예술제 : 40,000천원('25~'29년)
-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 축제 : 124,300천원('25~'29년)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지원 : 233,868천원('25~'29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사업비	1,203,779	234,712	238,100	240,841	243,637	246,489

다. 재원 조달 방안

- 도 일반회계 편성
- 국고보조금(보건복지부 등) 매칭 지원 건의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	-	-	-	-	-
세 출		234,712	238,100	240,841	243,637	246,489	1,203,779
어린이날 행사 (도 1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75,000
아동복지시설 체육대회 출전 (도 100%)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 (도 100%)		36,000	36,000	36,000	36,000	36,000	180,000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도 100%)		89,472	91,261	93,086	94,947	96,845	465,611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예술제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 축제		24,300	25,000	25,000	25,000	25,000	124,300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 체험실 지원		44,940	45,839	46,755	47,690	48,644	233,868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34,712	238,100	240,841	243,637	246,489	1,203,779
	지방세	234,712	238,100	240,841	243,637	246,489	1,203,779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시군비							
기 타 (민간 자부담 등)							